##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정

제정 2009. 8. 7. 규정 제 20호 개정 2010. 2. 26. 규정 제 47호 개정 2010. 5. 4. 규정 제 54호 개정 2011. 9. 1. 규정 제103호 개정 2011. 12. 15. 규정 제113호 전부개정 2012. 5. 8. 규정 제126호 [시행 2012.8.1] [규정 제134호, 2012.8.1, 일부개정] [시행 2012.10.31] [규정 제169호, 2012.10.31., 일부개정] [시행 2015.1.1.] [규정 제202호, 2014.12.22., 타내규개정] [시행 2015.5.11.] [규정 제218호, 2015.5.11., 일부개정]

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이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기부금 품을 모집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기부금품"이란 한국장학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이 명칭에 상관없이 재단의 사업을 위해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등(부동산·동산·유가증권·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  - 2. "기부의사자"란 재단에 기부 의사를 밝힌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.
  - 3. "기부자"란 재단에 기부금품을 납부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등을 말한다.
  - 4. "기부업무담당자'란 기부금품의 모집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 직원을 말한다.
- 제3조(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원칙) 기부업무담당자는 재단에 접수된 기부금품을 관계 법 령 및 기부자의 의사에 맞추어 적정하게 모집·사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규와의 관계)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2장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 및 납부

- 제5조(모집) 기부금품의 모집은 재단 홈페이지 게시·기부 광고·방문·서신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한다. 이 경우 기부업무담당자는 기부금품 모집·납부 관련 사항, 그 밖에 기부자에 대한 혜택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, 설명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2.10.31〉
- 제6조(접수) ① 기부의사자가 나타난 경우, 기부업무담당자는 홈페이지 입력 또는 그 밖의

방법을 통해 기부의사자로부터 별지서식 1부터 3까지의 기부약정서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무약정 기부의사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이 경우 기부업무담당자는 기부금품의 용도 및 세제혜택 등 기부에 따른 혜택을 기부의사자에게 공지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.
- ③ 기부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기부약정서를 받을 경우, 기부의사자로 하여금 기부약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1. 납부자에 대한 정보(기부자가 익명으로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)
  - 2. 납부방법
  - 3. 납부할 기부금품(기부금품의 항목, 수량, 기부금품의 금액 또는 예상되는 금액가치에 대한 사항 등을 말한다.)
- 4. 납부시기 및 기간(일시 납부 및 분할 납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)
- 5. 기부금 사용용도
- 6. 원금보전여부(기부금품의 원금을 보전한 채 기부금품 원금의 과실만을 기부 용도로 사용할 지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)
- ④ 기부업무담당자는 기부 약정을 접수받을 때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 법령에 비추어 불법 또는 부당한 기부 행위가 아닌지 주의하여야 한다.〈신설 2012,10.31〉
- 제7조(납부) ① 기부업무담당자는 기부의사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기부금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부업무담당자는 기부의사자가 약정한 납부 시기별로 기부금품의 납부를 안내하고, 납부가 지체된 경우 기부금품의 납부에 대해 기부의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.
  - 1. 무통장입금(계좌이체 방식 및 가상계좌를 통한 방식을 포함한다)
  - 2. 신용카드 결제
  - 3.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결제
  - 4.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통한 결제
  - 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방식
  - ② 기부의사자가 기부금품을 현물로 납부할 경우, 기부업무담당자는 해당 현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. 이 경우 기부업무담당자는 별지서식 5의 기부금품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관계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. 〈개정 2012.8.1, 2013.12.9. 2014.12.22〉
  - 1.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: 해당 현금을 인도받은 후, 학자금지원부로 하여금 국세청에 등록한 기부금 관리 전용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함

- 2. 현금 외 물품(미술품 등 가치 있는 물품을 말한다)으로 납부하는 경우 : 물품을 인도받은 후 공인된 감정기관을 통해 물품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한 후, 관계 내규에 따른 물품 관리부서로 보내어 관리하게 함
- 3.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: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평가가 액을 산정한 후, 업무지원실로 하여금 기부의사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관리하게 함
- 4. 동산 및 지식재산권서장으로 납부하는 경우 : 동산 및 지식재산권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업무지원실로 하여금 해당 동산 및 지식재산권에 대해 환가가액을 산정하여 관리 하도록 함
- 5.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: 유가증권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학자금지원부로 하여금 환가가액을 산정한 후 관리하게 함
- 제8조(영수증 등 발급) ① 기부업무담당자는 기부금품 납부가 완료된 경우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영수증 및 수령증을 발급하거나, 또는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.
  - 1. 일련번호
  - 2. 기부금품의 액수, 기부자 성명과 주소 등
  - 3.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된다는 문언
  - ② 기부업무담당자는 기부금품을 접수받았을 때 기부금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하며, 영수증 및 수령증을 발급한 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.
- 제9조(보고) 기부 업무 담당 부서장은 기부금품 접수 및 납부 내역에 대해서 수시로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#### 제3장 기부금품의 사용 및 후속 조치

- 제10조(사용) ① 기부금품은 기부자가 약정에서 정한 바(사용용도 및 원금보전 여부를 포함한다)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. 다만, 기부자가 정한 용도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  - 1. 학자금 지원
  - 2. 인재육성지원사업 지원
  - 3. 그 밖에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
  - ② 기부자가 정한 용도로 기부금품을 사용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, 또는 기부자가 지정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된 후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, 기부업무담당자는 기부금품 운영 위원회에 보고한 후 소외계층 지원 등 인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
- 제11조(기부금품 일부의 모집비용 사용) 재단은 기부금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의 금

원을 기부금품의 모집, 관리, 운영, 사용,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. 제12조(기부자에 대한 예우) ① 기부자에 대해서는 기부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.

- ②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학자금 무상지급을 할 경우 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기부자 명의로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부업무담당자는 학자금을 무상지급 받는 대학생에게 기부자 명의의 학자금 무상지급증서를 발급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단위 일간지에 공표하여야 한다.
- 1. 기부자의 명의 및 학자금 무상지급 규모
- 2. 학자금을 무상지급 받는 대학생의 대상 또는 범위
- 3. 그 밖에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# 제4장 기부금품 계정 관리 및 보고 공개의무 등

- 제13조(기부금품 계정 관리) 재단은 기부금품에 대해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한다. 다만, 기부금품의 액수 등 정황 및 기부자의 의사를 감안하여 해당 기부금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신설할 수 있다.
- 제14조(공개 및 보고) ① 기부업무담당자는 기부금품의 접수·납부 및 사용 실적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  - ② 기부업무담당자는 기부금품 대장·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, 그 밖에 기부금품의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·서류 등을 재단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.
  - ③ 기부업무담당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④ 기부업무담당자는 기부금품 사용에 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부금 품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- 1. 기부금품의 개별 사용에 대한 사항 : 사용 후 개최되는 제15조의 기부금품 운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보고
  - 2. 연간 기부금품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 :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
  - ⑤ 학자금지원부장은 기부금품 계정의 자산운용 결과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 내 「공인회계사법」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4.12.22〉

#### 제5장 기부금품 운영위원회

제15조(기부금품 운영위원회) ① 기부금품 제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단에 기부금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.

- 1.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품 활용 사업 계획
- 2. 기부금품의 사용
- 3. 기부금품 계정의 관리(원금을 보전하는 기부금품의 경우, 원금 외 과실의 사용비율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)
- 4. 제14조에 따른 보고 사항
- 5.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부 목적 달성 후 남은 금액의 사용
- 6.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 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
- ② 기부업무담당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부업무담당자는 기부금품을 사용한 시점 직후에 개최되는 위원회 회의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고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 〈신설 2012.8.1〉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·재단 이사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4명 이내의 외부위원, 기부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과반수여야 하며, 외부위원 중 1명은 재단 주무관청에 재직 중인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10.31〉
- 1.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
- 2. 경제, 경영 또는 금융 등 재무관련 학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
- 3. 공공기관에서 1급 이상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
- 4. 국가,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
- 5. 변호사, 회계사, 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
- 6.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
- 7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
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부 업무 담당 상임이사가 된다.
-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- 1. 과거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
- 2. 위촉 시 경력, 학력 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
-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재단 임직원인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.
- ⑦ 임기 중이라고 해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다.
- 1.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.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
- 4. 사회적,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⑧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서식 4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.
- ⑨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기부 업무 담 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.
- 제16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 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 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개의를 위해서는 외부위원 2인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.
  - ③ 외부 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〈개정 2012.8.1〉
  - ④ 위원회 회의는 대면심의·의결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 등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회 연속으로는 서면 의결할 수 없다. 〈개정 2012.10.31〉
  - ⑤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2.10.31〉
  - ⑥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에 장애가 예상될 경우에는 해당심의·의결에서 제외한다.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그 심의·의결에 대하여 회피할수 있다. 〈신설 2012.10.31〉
  -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, 관계전문가·당사자·이해관계인 및 재단 직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제18조(회의록) ①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

하다

- 1. 개회, 회의의 중지, 산회 일시
- 2. 회의장소
- 3. 출석 및 결석위원과 참석 위원의 서명
- 4. 회의 결과
- 5.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한다. 〈신설 2012.10.31〉
- ③ 제1항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기부 업무 담당 부서에서 통합하여 보존·관리한다. 〈개 정 2012.10.31〉
- 제19조(수당 등)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7조제6항에 따라 참석한 자 중 재단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재단 임직원이나 공무원인 자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재단 공식행사 초청·재단 시설물 사용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내용의 예우조치를 할 수 있다.
  - ③ 제17조제3항에 따라 외부 위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도 제1항을 준용한다. 이경우 해당 외부 위원에게는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 〈신설 2012.8.1〉
- 제20조(계약에의 참여 금지) 위원회의 위원은 재단의 기부금품을 활용한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.

[본조신설 2012.10.31]

부칙 〈규정 제134호, 2012.8.1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내규의 폐지) 기부자에 대한 감사와 예우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부칙〈규정 제134호, 2012.8.1〉

이 규정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규정 제142호, 2012.10.31〉(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감사규정 등

일부개정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규정 제137호, 2012.8.31〉(직제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내규의 개정) ①부터 ②까지 생략

②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"인력개발부"를 각각 "인사부로 하고, 별지서식 1, 별지서식 2, 별지서식 3 중 "인재육성지원부장"을 각각 "나눔봉사부장"으로 한다.

②부터 ②까지 생략

부칙 〈규정 제202호, 2014.12.22〉(직제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정기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내규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
②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재무관리부"를 "학자금지원부"로 하고, "인사부"를 "업무지원실"로 한다. 제14조제5항 중 "재무관리부장"을 "학자금지원부장"으로 한다.

별지서식 1. 별지서식 2. 별지서식 3 중 "나눔봉사부"를 "교육기부사업부"로 한다.

②부터 ②까지 생략

부칙 〈규정 제218호. 2015.5.11〉

이 규정은 공포한 때부터 시행한다.

[별지서식 1] 〈개정 2014.12.22., 2015.5.11〉

## 기부약정서(개인용)

## ❖ 기부자 정보

성명		주민 <del>등록</del> 번	ঠ				
주소		□ 자택 □ 직장	(우편번호 : - )				
연락처		유선전화 휴대전호	ł				
		E-mail	,				
직	장정보	직장명 직 위					
<b>⊹</b> º	<sup></sup> 정 정보	1					
기 :	부방법	□ 정기기부 □ 역	□ 정기기부 □ 일시기부				
세	정기 기부	ㅇ 매월납부액 : □1만원 □3만원 □5민	원 🗌 10만원 🗌 기타( <u>金 원)</u>				
부		○ <b>기부시작월</b> : <u>년 월</u>	○ <b>이체예정일</b> : <u>매월 일</u>				
사	일시	○ 약 정 액 : <u>金</u>	원(₩ )				
항	기부	○ <b>납부예정일</b> : <u>년</u> 월	일				
		○ 은 행 명 :	○ 계좌번호 :				
		□ 자동이체 ○ 예 금 주 :	○ <b>이체예정일</b> : <u>매월 일</u>				
납	부방법	□ <b>무통장</b> □ 우리은행(1005-601-531623)	□ 기업은행(037-076308-01-146)				
		입금	□ 하나은행(175-910011-87604)				
		□ 외환은행(630-006841-710)					
	보전여부 택일)	· □ 한국장학재단에 위임 □ 원금 ※ 원금보전의 경우, 기부원금의 사용 없이 기부원금의					
7] ]	부분야	□ 한국장학재단에 위임(비지정) □ 학지	-금 지원 □ 인재육성 지원				
(1	택일)	※ 원금소진의 경우, 기부금의 이자 수익은 한국장학재단 비지정기부로 활용됩니다.					
기부정보 공개여부		□ 공개 □ 비공	개				
재	단소식	□ 이메일 수신 □ 우편	물 수신 □ SMS 수신				
수신동의		※ 한국장학재단 기부금 사업 연차보고서, 소식지 등을	알려드립니다.				
본인은 위와 같이 한국장학재단에 기부약정서를 제출합니다. ※ 상기 정보는 영수증 발급, 기부자 예우 등의 기부관련 혜택 제공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							
		년 월 일					
한국	신청인 성명: (서명)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						
* 귀하의 기부금은 소득(세액)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* 신용카드, 휴대폰결제 등의 기부 납부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 * 일정금액 이하의 기부금의 경우, 기부자와 협의를 통해 비지정기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* 부동산과 동산, 유가증권 및 지식재산권 등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재단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. * 「기부정보 공개」를 선택하지 않으신 경우 '비공개'를 원칙으로 합니다.							
	문의처 :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부사업부 Tel.(02)2259-2621,2622,2028 Fax.(02)2259-2151 (100-753)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0(남대문로5가) 연세세브란스빌딩						

[별지서식 2] 〈개정 2014.12.22., 2015.5.11〉

## 기부약정서(단체용)

❖ 기부처 및 담당자 정보

<u> </u>		804 82		
단	체 명	□ 공식 □ 비공식		
단체	소재지	(우편번호 : - )		
대표	자 성명	단체 연락처		
담당	자 정보	성 명 유선전화		
		휴대전화 E-mail		
<u> </u>	정 정보			
기-	부방법	□ 정기기부 □ 일시기부		
	정기 기부	○ <b>매월납부액</b> : <u>金</u> 원(₩ )		
세부		○ <b>기부시작월</b> : <u>년 월</u> ○ 이체예정일 : <u>매월 일</u>		
사항	일시	○ <b>약 정 액</b> : <u>金</u> 원(₩ )		
	기부	○ <b>납부예정일</b> : <u>년 월 일</u>		
		○ 은 행 명 : ○ 계 좌 번 호 :		
		○ 예 금 주 : ○ 이체예정일 : <u>매월 일</u>		
		□ 자동이체 ○ 게 ㅁ ㅣ · ──── ○ 이제게 잉글 · 게글 ──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 □		
납-	부방법	*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할 경우 작성 요망		
		□ 우리은행(1005-601-531623) □ 기업은행(037-076308-01-146)		
		□ <b>무 통 장</b> □ 신한은행(100-025-420820) □ 하나은행(175-910011-87604)		
		입금 □ 외환은행(630-006841-710)		
원금.	보전여부	□ 한국장학재단에 위임 □ 원금소진 □ 원금보전		
(1	택일)	※ 원금보전의 경우, 기부원금의 사용 없이 기부원금의 운영수익[이자 등]으로 사업을 수행합니다.		
	부분야	□ 한국장학재단에 위임(비지정) □ 학자금 지원 □ 인재육성 지원		
	택일)	※ 원금소진의 경우, 기부금의 이자 수익은 한국장학재단 비지정기부로 활용됩니다.		
기부정보 공개여부		□ 공개 □ 비공개		
재	단소식	□ 이메일 수신 □ 우편물 수신 □ SMS 수신		
수	신동의	※ 한국장학재단 기부금 사업 연차보고서, 소식지 등을 알려드립니다.		
본인은 위와 같이 한국장학재단에 기부약정서를 제출합니다. ※ 상기 정보는 영수증 발급, 기부자 예우 등의 기부관련 혜택 제공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				
	년 월 일			
	신청인 성명: (서명)			
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				
* 귀하의 기부금은 소득(세액)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* 신용카드, 휴대폰결제 등의 기부 납부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 * 일정금액 이하의 기부금의 경우, 기부자와 협의를 통해 비지정기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 * 부동산과 동산, 유가증권 및 지식재산권 등의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재단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. * 「기부정보 공개」를 선택하지 않으신 경우 '비공개'를 원칙으로 합니다.				
	문의처 :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부사업부 Tel.(02)2259-2621,2622,2021 Fax.(02)2259-2159 (100-753)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0(남대문로5가) 연세세브란스빌딩			

[별지서식 3] 〈개정 2014.12.22., 2015.5.11〉

## 기부약정서(사업자용)

## ❖ 기부처 및 담당자 정보

사업	자 상호	□ 개인 □ 법인 사업자등록번호				
본점 소재지		(우편번호 : - )				
대표자 성명		본점 연락처				
		성 명 유선전화				
급 당	자 정보	휴대전화 E-mail				
<b>᠅</b> 익	정 정보		_			
기	부방법	□ 정기기부 □ 일시기부				
	정기	<ul> <li>○ 매월납부액 : 金</li> <li>원(₩</li> </ul>				
세부	기부	○ <b>기부시작월</b> : <u>년 월</u> ○ 이체예정일 : <u>매월 일</u>	<u> </u>			
사항	일시	○ <b>약 정 액</b> : <u>金</u> 원(₩	)			
	기부	○ <b>납부예정일</b> : 년 월 일				
	:	○ 은 행 명 : ○ 계 좌 번 호 :	_			
		○ 예 금 주 : ○ 이체예정일 : 매월 일	ļ			
		□ 사용이체	÷			
납.	부방법	○ 예 금 주 주민등록번호 :				
	-	<ul><li>※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할 경우 작성 요망</li><li> □ 우리은행(1005-601-531623)</li><li>□ 기업은행(037-076308-01-146</li></ul>	<u> </u>			
		□ <b>무통장</b> □ 신한은행(100-025-420820) □ 하나은행(175-910011-87604	)			
		입금 □ 외환은행(630-006841-710)	,			
원금.	보전여부	□ 한국장학재단에 위임 □ 원금소진 □ 원금보전				
1)	택일)	* 원금보전의 경우, 기부원금의 사용 없이 기부원금의 운영수익[이자 등]으로 사업을 수행합니다.				
7] -	부분야	□ 한국장학재단에 위임(비지정) □ 학자금 지원 □ 인재육성 지옥	싄			
1)	택일)	※ 원금소진의 경우, 기부금의 이자 수익은 한국장학재단 비지정기부로 활용됩니다.				
기부정보		□ 공개 □ 비공개				
	개여부		_			
	단소식	□ 이메일 수신 □ 우편물 수신 □ SMS 수신				
一丁	신동의	※ 한국장학재단 기부금 사업 연차보고서, 소식지 등을 알려드립니다.				
	※ 상기 정	본인은 위와 같이 한국장학재단에 기부약정서를 제출합니다. 보는 영수증 발급, 기부자 예우 등의 기부관련 혜택 제공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음에				
	동의합니다.					
		년 월 일				
		신청인 성명: (서명	∄)			
한국	Y 장학재 F	는 이사장 귀하	, /			
* 귀하	의 기부금은	-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	
* 신용카드, 휴대폰결제 등의 기부 납부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. * 일정금액 이하의 기부금의 경우, 기부자와 협의를 통해 비지정기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						
	* 부동산과 동산, 유가증권 및 지식재산권 등의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재단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. *「기부정보 공개」를 선택하지 않으신 경우 '비공개'를 원칙으로 합니다.					
		니처 :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부사업부				
		(100-753)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10(남대문로5가) 연세세브란스빌딩				

[별지서식 4]

### 청 렴 서 약 서

□ 위원회 명 :

본인은 위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등 규정에 따라 공 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으며, 심의과정에서 이유여 하를 막론하고 금품,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질 것을 서약하며,

아울러 상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.

201 . . . .

서 약 자: (서명)

한국장학재단 〇〇〇위원회 위원장 귀하

### [별지서식 5] 〈신설 2012.8.1〉

# 기부물품 인수인계서

아래와 같이 기부물품을 인수하고, 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۸۱ که	담당	팀장	부서장
인수 부서			
△] =ŋ	담당	팀장	부서장
인계 부서			

## [인수인계물품 세부내역]

(단위 : 원)

순번	종 류	품 명	규 격	가 격 (원)	비고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6					
7					
8					
9					
10					
11					
12					
13					
14					
15					
16					
특기사항					